

공유재산(장충어린이야구장)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장충어린이야구장의 사용허가 조건을 규정합니다.

제2조(조례 등의 준수)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장충어린이야구장 허가조건(사용안내 및 이용수칙포함), **이용시간(9:00~17:00)**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허가 변경신청) 사용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15일)**에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 “사용허가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국제경기(행사) 또는 서울시의 경기(행사)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2. 사용허가 시설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유료인 경우)
5.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
- 8. 기타 사용안내 및 시설사용(이용)수칙 등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5조(사용의 정지) 사용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야구장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기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우천, 강풍, 폭설 등 기온 급강하의 날씨로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장충어린이야구장은 동절기(12월 ~ 다음해 2월) 휴장

제6조(입장의 제한) 사용허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3. 위험물질이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기구 및 병류, 주류 등을 소지한자
4. 경기장내에서의 음주, 흡연행위자 및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5. 기타 운동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료) 야구장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 되거나 멸실 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한 안전(질서유지)요원 1명이상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 운동시설 내에 질서유지와 음주, 흡연, 소란행위, 불법주차를 단속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청소요원을 배치하여 행사장, 관람석 및 화장실 등 사용시설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폐기물 등을 분리하여 경기 또는 행사 당일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범위, 투입인력, 배출물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명시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업체가 청소업무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고, 현수막 · 현판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용자가 수거처리
2. 재활용품(캔류, 병류)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이 불가하니 종류별로 수거 후 경기장 관계자에게 인계

제9조(광고물의 게첨)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된 안내문, 광고문 등을 게첨할 경우 규격, 장소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 종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소음방지) 사용자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과도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 허가자가 전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음성 응원도구를 사용한 과도한 응원의 경우
2. 앰프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80db 이상일 경우

제11조(안전사고 및 배상책임보험증서의 제출) ①사용허가자는 사용자에게 관람객 및 경기(행사)요원의 안전사고 등에 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내·질서유지·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선수 및 출연자, 관람객, 기타 시민 등에 대한 안내 및 질서유지,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파울볼 및 장외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제반시설(전광판, 음향시설, 냉·난방기, 부속시설 등)을 사용 시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기간 중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심판, 장내 아나운서, 볼보이, 마운드(베이스)관리, 통신운영, 전광판운영 등]을 통제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③ 야구장 사용 후 마운드 및 루베이스, 라인 등 모든 시설물을 경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④ 모든 경기(훈련)는 허가시간 내에 마무리하여 다음 사용자의 경기(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마운드 및 덕 아웃 등을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경기장내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 금지 및 껌, 담배를 소지하고 입장하거나 징스파이크 착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릅니다.

제13조(사용제한 기간) ① 허가조건 제4조의 제1호 ~ 제7호, 제8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6개월간 장충어린이야구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허가조건 제2조, 제4조의 제8호, 제9조, 제12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장충어린이야구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제1항, 제2항에 의한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전에 우선 1차 주의장, 2차 경고장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서가 제출 될 경우에는 제한기간은 경감할 수 있습니다.